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0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송도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성준, 김용일, 김인제,
김춘곤, 남창진, 박영한,
박철성, 봉양순, 성흠제,
아이수루, 유정희, 이민옥,
, 이영실, 이원형, 임규호,
임만균, 최민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신규입주 및 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로와 소방용품·설비에 관한 위치 및 사용법을 안내토록 하는 한편,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인 경우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신규입주 및 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옥상 출입문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8조제2항)
- 나.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8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시장은” 부분을 “① 시장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 - 1. 신규입주 및 전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대피로와 소방용품 및 소화설비에 관한 위치와 사용법 안내
 - 2.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(다만,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 출입문은 제외한다)
-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교육·홍보) <u>시장은</u> <u>막은 아파트</u> 만들기를 위한 교육·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교육·홍보) ① <u>시장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<u>신규입주 및 전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대피로와 소방용품 및 소화설비에 관한 위치와 사용법 안내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<u>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(다만,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 출입문은 제외한다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제2항제2호에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문서번호

20230119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송도호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류동균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3.01.19.

회신일 : 2023.01.20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
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상지출 증가가 예상되나,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대상의 개수 추정 등 개연성이 있는 예산의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(제3조제1항 제2호)

-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신규입주 및 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옥상 출입문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8조제3항에서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상지출 증가가 예상되나,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개수 추정 등 개연성이 있는 예산의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 과장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 팀장

분석관(주무관) 류동균 분석관

☎ 02-2180-7952

e-mail : rooster72@seoul.go.kr